



제 430 회 국 회 (임 시 회)
제 1 차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속 기 사 법 안 검 토 보 고

■ 박수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100호)

2025. 1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천 우 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6
가. 개요	6
3.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8
4. 타 협회 의견	12
5. 주요 조문별 검토	14
가. 총칙	14
나. 속기사의 자격과 시험	16
다. 속기사의 업무등록	19
라. 속기사의 권리·의무	24
마. 대한속기사회	25
바. 지도·감독	27
사. 보칙	30
아. 벌칙	32
자. 부칙	34
※ 참고자료	
1. (사)대한속기협회 현황	36
2. 속기 관련 민간 협·단체 현황	38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박수현의원 등 11인

나. 제 출 일 : 2025. 9. 18.

다. 회 부 일 : 2025.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속기란 음성 언어를 특정 부호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한 뒤, 이를 문자 언어로 바꾸는 기록방법으로, 일반 문자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말의 속도를 기록할 수 있는 특수 문자 체계임.

속기사는 ‘현대판 사관’, ‘기록의 마술사’로 불리며,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기록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기록이 곧 역사다”라는 인식 아래 80년 헌정사를 기록해 오면서 왜곡 없는 정직한 역사를 남긴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활동해 왔음.

그러나 최근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기술의 발전, 그에 따른 기록의 신속·정확성 등의 요구로 속기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현재의 대한속기협회 조직으로는 속기사의 권익 보호와 전문성 강화, 그리고 속기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에 한계가 있음.

이에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속기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속기사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속기사는 공공기관(입법, 사법, 행정기관 등)과 장애인을 위한 자막 작성, 상장기업의 주주총회 등의 속기 업무를 수행함(안 제3조).

다.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기사의 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하고 속기 및 속기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4조).

라.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속기사 자격이 있으며 속기사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고,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마. 속기사(속기법인 포함) 자격이 있는 자가 속기업무에 종사하려면 대한속기사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대한속기사회는 업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함.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등록 거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

바. 속기사는 업무에 관하여 그 업무를 의뢰한 자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고 그 외에 의뢰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함(안 제25조).

사. 속기사는 자신이 직접 작성하거나 보정한 속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성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하여야 하며 서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없음(안 제26조).

아. 속기사제도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대한속기사회’를 둠(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속기사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 습득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32조 및 제33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의 신뢰성 및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속기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속기사법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되어 있음.
- 제정안은 속기사 육성 및 발전을 위해 속기 전문직을 법적으로 공인·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록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서, 속기 및 공인속기사 등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속기사의 업무, 속기사의 자격과 시험, 속기사의 업무등록, 속기사의 권리 및 의무,, 대한속기사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법적 독점권을 가지는 전문직에 관한 법률로써, 「변호사법」,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타 입법례와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보칙에서 수수료, 지원 등과 위임규정 등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부칙으로 대한속기협회를 대한속기회로 자동 이관하는 실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정안의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업무) 제4조(숙기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제4장 숙기사의 권리·의무 제25조(보수) 제26조(숙기사 서명의무 등) 제27조(숙기록의 수정 등) 제28조(대한숙기사회 설립 등) 제29조(숙기사회의 가입 의무) 제30조(숙기사회의 정관) 제31조(「민법」의 준용)
제2장 숙기사의 자격과 시험 제5조(숙기사의 자격) 제6조(숙기사 자격시험) 제7조(숙기사자격심의위원회) 제8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9조(결격사유)	제6장 지도·감독 제32조(숙기사 인력의 양성) 제33조(숙기사의 정기보수교육) 제34조(자격정지 및 취소)
제3장 숙기사의 업무등록 제10조(등록 등) 제11조(업무등록증의 대여 금지) 제12조(사무소 등의 설치) 제13조(사무소의 명칭 등) 제14조(폐업신고) 제15조(숙기법인) 제16조(숙기법인의 설립절차 등) 제17조(숙기법인의 사무소) 제18조(숙기법인의 업무집행방법) 제19조(숙기법인의 해산) 제20조(숙기법인 인가 취소 등) 제21조(경업의 금지)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제23조(비밀엄수 등) 제24조(준용규정)	제7장 보칙 제35조(수수료) 제36조(지원 등) 제37조(위임)
	제8장 벌칙 제38조(벌칙) 제39조(양벌규정) 제40조(과태료)
<부 칙> 1.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숙기사회의 설립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숙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3.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4. 숙기업무 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2. 총괄적 검토

가. 개요

- 제정안은 속기사에게 업무독점권을 보장하는함으로써, 속기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속기사의 자격과 역할을 명확히 하며, 속기문화의 연구와 보급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업무독점권은 다루는 영역이 전문성을 요하고 잘못 수행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비밀유지, 공익 우선 의무 등이 요구되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침해 원칙을 적용해야 함.
- 속기사는 국회, 법원 등에서 주요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공적 기록을 작성하고 있어, 오류나 왜곡이 발생하면 개인의 권리와 역사 기록 모두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단순 회의록, 일반 기업 내부 회의·인터뷰·자막 제작 등은 완전 독점보다는 자격 표시, 품질 기준, 책임 규율 정도로 관리하고, 시장·기술 경쟁을 허용하는 것이 더 합리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는 점을 균형있게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아울러, 체계적으로 실체적 규정인 수수료, 국가의 지원 위임규정 등을 보칙에서 규정해 이를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 또한, 타 입법례에서 협회 설립과 가입 의무를 규정하면서 협회의 설립 요건과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제정안은 협회 설립의 요건은 본문에서 규정하면서 부칙에서 특정 사단법인인 대한속기협회를 지정해 대한속기회로 지정해 공인화하고 재산, 권리, 임직원 등을 자동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타 입법례와 비교시 특정 협회에 특례를 주는 규정으로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현재 대한속기협회 외에 속기 관련 협회로 사단법인 한국CAS속기협회, 사단법인 한국AI속기사협회가 있음

2. 문화체육관광부 의견

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률로써 부적절

- 제정안에서 속기사 자격시험, 등록, 법인 인가, 자격정지·취소, 보수 교육 등 속기 제도 전반을 문체부 장관 소관으로 일원화하였으나 문체부의 주된 소관은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국어 진흥 등 국민 문화 향유와 표현 활동의 진흥에 초점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관장 사무

「정부조직법」 제39조(문화체육관광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관광, 국정에 대한 홍보 및 정부발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반면 속기 업무는 언어문화 진흥이나 표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적 활동이 아니라, 행정·사법 등 공적 절차에서 발언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는 기술적 행정지원¹⁾ 행위에 가까움
- 따라서 속기는 '언어 정책'이나 '국어 사용'의 진흥보다, '기록·정보 관리' 및 '공공행정 지원'의 범주에 속한다고 사료되며, 속기 업무가 실제로 법원, 국회, 지방의회, 행정기관 회의 등 공공기록 생산 현장에서 수행된다는 점에서, 속기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소관) 또는 공공기관의 회의 운영 및 정보공개 관련 법령(국회·사법부·행안부 등 관련)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사료됨.

1) 「속기업무 운용준칙」(대검찰청 예규 제1425호)

- 속기 자격 또한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소관 국가기술자격(사무분야, 한글속기) 또는 민간단체²⁾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으로 관리 되고 있음.

* 국가기술자격법 제3조제1호 관련 동법 시행규칙 별표2, 한글속기(사무분야)

직무분야	중직무분야	서비스 분야			
		1급	2급	3급	단일등급
경영·회계·사무	사무	한글속기	한글속기	한글속기	

< 속기사 국가자격제도 연혁>

- 1982년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서 한글속기사 자격검정시험 시행
- 1984년 고용노동부(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사업”의 일환으로 실시 중

- 특히 속기자료의 생산·보존 활용은 기록물 관리체계(행정안전부)의 관리하에 이루어지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별도로 이를 관리 지도할 타당성 부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 체계상 속기 업무는 행정안전부(기록관리·정보공개) 또는 고용노동부(자격관리) 소관과의 연계성이 높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유 기능과 직접적 연계성이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임.

2) (사)한국AI속기사협회 주관, 데이터전문속기(과기부), 수사속기(경찰청), (사)한국CAS속기협회 주관, CAS속기활용능력 등

나. 대한속기사회의 법정 법인화의 타당성·형평성 부족

- 제정안에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를 '대한속기사회'의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여 문체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대한속기협회는 속기 분야의 오랜 단체이나 주로 국회 출신 속기사들을 필두로 운영하고 있어, 법원, 의회, 민간 등 다양한 분야의 속기사와 관련 단체 등을 모두 대표하는 법적·실질적 대표성은 한정적이며 유사 직능단체(통·번역가, 타이피스트 등)와의 형평성도 위반되는 측면이 있음³⁾.
- 실제로 현장에는 대한속기협회외에도 카스(CAS) 기종의 한국카스(CAS)속기협회와(1999년 과기부 인가), 소리자바(SORIZAVA) 기종의 한국AI속기사협회(1996년 서울시교육청 인가)의 단체가 독립적으로 활동중이고, 비회원 속기사나 법원속기사협의회, 지방의회 속기연합회, 전자속기 관련 협회 등 타 단체 소속 속기사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정 사단법인을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속기사 자격 교육 인증 권한을 한 기관에 집중하면 타 학회나 교육기관의 참여와 경쟁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속기 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현장에는 국가자격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여 활동하는 속기사가 있음에도 국가자격을 취득하여 대한

3) 국가고시 중심의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리사회 등은 대표성·공공성이 명확하나 통·번역가, 타이피스트 등 속기사와 유사한 직능단체의 법정 법인은 없음.

속기사회에 등록된 자만이 속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공지능(AI) 속기 음성인식 기반 전자 속기 분야로 산업이 빠르게 전환 중 상황에서 특정 사단법인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신기술 기반 사업자나 스타트업의 진입장벽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타 협회 의견

가. 사단법인 한국CAS속기협회

- 제정안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장애인 방송 자막 및 폐쇄자막방송은 이미 별도의 전문 영역으로 운영되어 있어, 속기 자격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타 직종의 업무 침해 및 업역 중복 우려 존재함.
- 속기 관련 자격제도는 이미 국가 공인 ‘한글속기’, 민간자격 ‘수사속기’, ‘CAS활용능력(빅데이터)’ 등이 존재하므로, 공공 및 민간 자격체계의 중복과 혼란을 초래함.
- 제정안이 협회 등록 및 주기적(5년마다) 갱신, 협회 교육 이수 등을 의무화하는 것은 현장 전문가들에게 과도한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속기 업무는 방송, 회의록, 수사 등 다양한 특성이 있어 일률적 제도 적용은 부적절하며, 과도한 국가 규제 및 민간 활동 위축이 우려됨.
- 본 협회에서 시행 중인 속기 실무연수, 민간자격, 속기문화 보존사업 등과 동 법안의 내용과 중복되어 기관 간 사업 충돌 및 혼란이 발생할 소지 있음.
- 기록은 속기사만의 고유 영역이 아니며 동 법인은 ‘음성 정보를 문자로 전환하는 모든 행위’를 속기 범위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기록 업무를 법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킴, 이는 속기사의 전문

성과 개별성을 무시하고, 속기 수요자가 규제 속에서 자유롭게 속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듦.

- 속기서비스 품질 저하 및 시장 혼란,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나. 사단법인 한국AI속기사협회

- 대한속기협회는 소리자바 기종 속기사들의 회원가입 및 속기경기대회 등 외부 행사 참여를 제한적으로 운영해 왔으며, 속기사 전체를 대표하거나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려운 실정임.
- 이는 그동안 속기사들 처우를 위해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던 대한속기사협회에 부당한 특혜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임.
- 속기사의 업무 규범·책임 및 불합리한 벌칙 조항은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고 속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주요 조문별 검토

가. 총칙

1) 제정안 요지

- 「속기사법안」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 속기사의 업무 규정(안 제3조)

2) 제정안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글을 바탕으로 한 속기사제도를 확립하여 속기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속기”란 음성 등의 소리 정보를 부호 또는 기계 등을 사용하여 기록한 후 오류를 교정하거나 보정하여 문자정보로 바꾸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2. “공인속기사”(이하 “속기사”라 한다)란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가입하여 속기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속기록”이란 속기사가 회의, 재판, 심문 등의 발언 내용을 속기한 기록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5. “서명”이란 속기사가 본인이 작성한 속기록의 진정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성명 등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업무) 속기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요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

2. 국회·지방의회에 있어서 본회의·위원회·소위원회의 의사(議事)에 대한 속기
3. 헌법재판소, 법원, 검찰, 경찰 등 사법 절차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군사법기관을 포함한다)이 조사, 수사 과정에서 작성하는 것으로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속기록 및 녹취록의 작성과 공판정 또는 이에 준하는 심판정에서 변론·증언·진술 등 재판이나 심판내용을 기록하는 속기록의 작성
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에 따른 폐쇄자막 및 화면해설 자막의 작성
5.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회사의 주주총회 속기록의 작성
6. 다른 법령에서 속기를 규정하거나 속기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의 기록 작성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에 관한 기록의 작성

제4조(속기사가 아닌 사람에 대한 금지 사항) ①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에 따른 속기업무를 업(業)으로 하지 못한다.

②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속기, 속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4조는 속기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속기업무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속기사의 업무독점성을 부여하고 있는바, 업무독점권은 다루는 영역이 전문성을 요하고 잘못 수행될 경우 개인과 사회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 비밀유지, 공익 우선 의무 등이

요구되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침해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임.

- 국가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속기록 의무생산 회의는 회의록 의무작성 회의 중 일부를 지정하고 있는바, 속기사의 주요 업무 범위에 주요 회의의 회의록 및 속기록 작성에서 회의록 작성은 제외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나. 속기사의 자격과 시험

1) 제정안 요지

- 속기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 등과 관련한 사항과 결격사유 등 규정

2) 제정안 조문

제5조(속기사의 자격)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속기사 자격이 있다.

제6조(속기사 자격시험) ① 속기사 자격시험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 자격시험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과 시험방법, 그 밖의 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 ①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둔다.

1. 속기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속기사 자격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속기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 날 또는 합격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속기사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

3) 검토사항

- 안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속기사의 자격 및 자격시험, 결격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사법」,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타 입법례의 체계와 비교할 시 특이사항 없음.
- 다만 문체부는 문체부의 주된 소관은 「정부조직법」 제39조에 따라 문화·예술·체육·관광·콘텐츠·국어 진흥 등 국민 문화 향유와

표현 활동의 진흥에 초점이 있고, 속기 업무는 언어문화 진흥이
나 표현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문화·예술적 활동이 아니
라, 행정·사법 등 공적 절차에서 발언을 정확히 기록 보존하는
기술적 행정지원 행위에 가깝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고용노동부는 현행 국가기술자격 한글속기 1~3급 종목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중이고, 공인중개사 등 사례처럼,
법률에는 위탁의 근거, 위탁기관의 요건 등을 규정하고 실제
수행 기관은 주무부처의 고시로 지정하여, 행정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자격시험
업무위탁 대상기관에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여 입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향후 더 전문적이거나 효율적인 기관의
참여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위원회법」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속기사 자격의 취득과 자격의 정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기사자격심의위원회 설치하는
경우에 존속 기한(최대 5년)을 법령에 명시 필요

다. 속기사의 업무등록

1) 제정안 요지

- 속기사의 업무 등록, 업무등록증의 대여 금지, 사무소와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

2) 제정안 조문

제10조(등록 등) ① 속기사(제15조에 따른 속기법인을 포함한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는 업무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속기사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체나 정신상의 장애(障害)로 속기사의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하면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 거부에 대한 불복의 이유를 소명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는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그 속기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등록증의 대여 금지) 속기사는 다른 사람에게 제10조제1항에 따른 업무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사무소 등의 설치) ① 속기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하기 위한 사

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다.

② 속기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속기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사무소의 명칭 등) ① 속기사는 그 사무소의 종류별로 사무소의 명칭 중에 속기사사무소 또는 속기사합동사무소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속기사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속기사가 아닌 사람은 속기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속기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속기사합동사무소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4조(폐업신고) ① 속기사가 폐업한 경우에는 본인, 사망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동거인 또는 그 사무직원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폐업한 속기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속기법인) ① 속기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이하 “속기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속기법인의 사원은 2명 이상의 속기사로 구성한다.

③ 속기법인은 사원이 아닌 속기사(이하 “소속 속기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다.

제16조(속기법인의 설립절차 등) ① 속기법인을 설립하려면 사원이 될 속기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사원의 성명과 주소
5. 사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6.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7.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속기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登記하여야 한다.

④ 속기법인은 그 주사무소에서 설립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속기법인의 사무소) ① 속기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에는 속기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속기법인의 사원과 소속 속기사는 그 속기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18조(속기법인의 업무집행방법) ① 속기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속기사(이하 “담당속기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속기사가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속기법인을 대표한다.

③ 속기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속기록에는 법인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속기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9조(속기법인의 해산) ① 속기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② 속기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속기법인 인가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원의 수(數)에 미치지 못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경우

제21조(경업의 금지) ① 속기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 속기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속기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속기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 속기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속기법인의 사원 또는 소속 속기사이었던 사람은 그 속기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속기법인의 담당속기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속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속기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속기사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

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엄수 등) ① 속기사 또는 속기사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사실이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 또는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속기사는 속기록을 고의적으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하지 못하며, 공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속기사는 속기록에 주관적인 해석을 추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기록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기록하거나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속기사는 속기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의뢰받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고의적으로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준용규정) 속기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3장 속기사의 업무등록은 타 입법례를 준용한 규정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장의 제명과 조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임

- 구체적으로 타 입법례의 경우 안 제11조(업무등록증의 대여 금지), 안 제12조(사무소 등의 설치), 제22조(손해배상의 보장), 안 제23조(비밀엄수 등)은 권리·의무 장으로 안 제15조(속기법인),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의 속기법인 관련 규정은 별도의 법인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안 체계에 맞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문체부는 상기 의견과 동일하게 문체부 소관 법률로써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라. 속기사의 권리·의무

1) 제정안 요지

- 속기사의 보수, 서명의무 등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

2) 제정안 조문

제25조(보수) ① 속기사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의뢰인으로부터 정당한 보수를 받는다.

② 속기사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보수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의뢰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한다.

③ 속기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28조에 따른 대한속기사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속기사 서명의무 등) ① 속기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 작성하거나 보정한 속기록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진정성을 확인한 후 이에 서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명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속기록의 수정 등) 속기사가 속기록 작성 후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속기록 수정 또는 정정이 필요한 사유를 기재한 후 서명을 추가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4장 속기사의 권리·의무에서는 속기사의 보수 및 속기사의 서명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25조 보수에서 속기사의 보수기준을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대한속기사회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수는 원칙적으로 속기사와 수요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안 제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법률체계에 맞도록 조문을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체부는 상기 의견과 동일하게 문체부 소관 법률로써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과거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등 9개 전문자격사의 보수 또는 수수료 기준을 관련 협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던 관련 법률 해당 조항을 삭제한 바 있다는 점에서 속기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사항은 속기사와 속기 서비스 수요자의 자율적인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마. 대한속기사회

1) 제정안 요지

- 대한속기사회 설립 및 가입의무와 정관 등을 규정

2) 제정안 조문

제28조(대한속기사회 설립 등) ① 속기사의 품위향상과 속기제도 등의 개선
·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속기사회(이하 “속기사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속기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속기사회는 정관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속기사회의 설립·운영 및 설립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속기사회의 가입 의무) 제6조에 따라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속기사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속기사회의 정관) ① 속기사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표자와 그 밖의 임원에 관한 사항
3. 회의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속기사의 품위유지와 제도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가입·탈퇴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자산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속기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관을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1조(「민법」의 준용) 속기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29조에서 대한속기사회 가입을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리사법과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타 입법례에서도 협회가입을 의무화하지 않고 등록 규정만을 두고 있고, 안 제10조에서 속기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속기사회에 등록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의 실익이 적어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문체부는 상기 의견과 동일하게 문체부 소관 법률로써 부적절한 측면이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바. 지도·감독

1) 제정안 요지

- 속기사 인력의 양성 지원, 속기사의 정기보수교육 의무화, 속기사의 자격 정지 및 취소 근거 마련

2) 제정안 조문

제32조(속기사 인력의 양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공지능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능력 있는 속기사 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훈련 실시를 속기사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과정, 과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속기사의 정기보수교육) ① 제3조에 따라 속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속기사는 5년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보수교육을 속기사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 능력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공지능 등 새로운 속기제도의 습득, 윤리 강화 등 속기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에 관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3항에 따른 수시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를 속기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자격정지 및 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기사의 신뢰성과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1. 속기사가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을 받은 경우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사가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아니한 속기록에 대리하여 서명하는 경우 또는 서명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서명한 경우
3. 제27조를 위반하여 속기사가 서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속기록을 수정 또는 변경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기사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에 3회 이상 무단으로 속기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기밀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속기록을 고의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반복적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6. 제38조에 따라 징역형이 확정된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회가 속기사에 대한 자격정지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속기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32조는 인공지능 등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미래 속기 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속기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안 제33조는 속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속기사로 하여금 5년마다 정기교육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필요시 문체부장관이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속기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국민에게 신뢰성 높은 속기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34조는 보수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속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하여 속기사의 자격을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6개월 범위 내 자격 정지		자격 취소	
위반 조항	위반 내용	위반 조항	위반 내용
제25조제2항	보수 외의 금품 수령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속기사의 자격을 취득
		-	자격이 정지된 기간 중 3회 이상 무단으로 속기업무 수행
제26조제1항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속기록에 대리하여 서명한 경우, 서명을 하지 않거나 허위로 서명한 경우	제23조제1항	속기업무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기밀정보를 누설·유출하는 등 비밀엄수의무 위반
제27조	서명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속기록을 수정·변경한 경우	제23조제2항	속기록을 고의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
		제25조제2항	반복적으로 금품 수령
		-	징역형 확정

사. 보칙

1) 제정안 요지

- 속기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속기사회 운영 예산 지원 및 업무 위임 근거 마련

2) 제정안 조문

제35조(수수료) ① 제6조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② 제32조제2항에 따라 속기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속기사회,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각종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제36조(지원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 제도개선 및 속기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 등을 속기사회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속기사가 속기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속기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37조(위임)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속기사회에 위임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35조는 속기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시험 응시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속기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속기사회 등이 교육훈련 참여자로부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속기사 자격시험의 신뢰성과 교육훈련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안 제36조는 문체부장관이 속기 제도개선 및 속기사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속기사회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장관으로 하여금 속기사의 권익 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속기사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 안 제37조는 이 법에 따른 문체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속기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위임과 위탁은 법률상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나, 통상 위임은 보조기관·하급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지휘·감독 관계 있는 행정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고, 위탁은 원 권한자로부터 독립된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므로, 위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임
- 다만 해당 조문들은 실체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보칙에 두지 않고 조문 이동을 하여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아. 벌칙

1) 제정안 요지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를 규정

2) 제정안 조문

제3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사 업무를 업(業)으로 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업무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를 한 자
3.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명된 공식 속기록을 정당한 이유없이 폐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밀을 외부에 공개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의적으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한 자
3.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주관적인 해석을 추가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기록·수정한 자

제39조(양벌규정) 속기사 또는 속기법인의 소속 속기사가 속기업무와 관련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속기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속기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및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 속기사, 대한속기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속기사(속기법인을 포함한다)가 속기사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속기사업무에 종사한 자

②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속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실로 속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2. 속기사가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보정없이 제26조제1항에 따라 서명한 자
3.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수를 거부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3) 검토사항

- 안 제38조와 제40조는 본 법률안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구분	처벌(과태료) 수준	위반내용	위반 조항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률에 근거 없이 속기사가 아닌 자가 속기업무를 한 경우	제4조제1항
		업무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행위를 한 자	제11조
		서명된 공식 속기록을 정당한 이유 없이 폐기 한 자	제26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고의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밀을 외부에 공개한 자	제23조제1항
		속기록을 고의로 왜곡·변조하거나 다른 의미로 수정한 자	제23조제2항
		속기록에 주관적인 해석을 추가하거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기록·수정한 자	제23조제3항
과태료	500만원 이하	속기, 속기사, 대한속기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4조제2항, 제28조제1항
		속기사가 속기사회에 등록하지 않고 속기사업무에 종사한 자	제10조제1항
	100만원 이하	고의로 속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
	10만원 이하	과실로 속기록에 서명하지 아니한 자	제26조제1항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부주의로 보정 없이 속기록에 서명한 자	제26조제1항
		정기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수를 거부한 자	제33조제1항

자. 부칙

1) 제정안 요지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대한속기협회가 속기사회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

2) 제정안 조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속기사회의 설립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이하 “속기협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속기사회로 본다. 이 경우 속기협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속기협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속기사회의 재산과 권리·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속기협회의 명의를 속기사회의 명의로 본다.

③ 속기사회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속기협회가 행한 행위는 속기사회가 행한 행위로, 속기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속기사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속기협회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속기사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속기협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글속기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법에 따른 속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본다.

제4조(속기업무 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속기업무를 운영하고 있는 속기사(속기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에 따른 속기업무를 운영하는 속기사로 본다. 다만,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다시 등록하여야 한다.

3) 검토사항

- 제정안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는 속기사회의 설립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속기협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법인 전환에 따른 일반적인 입법례임. 부칙 제3조와 제4조는 속기사 자격시험과 속기업무 운영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 자격과 속기업무의 연속성을 인정하여 법 질서를 유지하려는 것임.
- 다만, 해당 조문들은 대한속기사회의 구성에 있어 대한속기협회를 특례적으로 지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해당 조문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연혁

- 1955년 ‘대한속기학술협회’로 창립
- 1969년 문화공보부 인가 사단법인 * 2002년 서울시 소관 사단법인으로 변경
- 1983년 국제속기연맹(인터스테노) 가입
- 1993년 INTERSTENO IPRS에 가입한 한국 대표 속기사단체
- 회원 : 국회, 지방의회, 법원, 검찰 등 국가기관 및 공기관 활동 교육 기관, 자막방송, 프리랜서 등 약 1만여 명 활동
- 1997년부터 2023년까지 문체부에서 국고보조를 함
 - * 주로 국회 속기사(수필속기사)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비영리 사단법인

□ 목적

- 속기인의 권익보호와 품위향상 및 속기업무의 개선,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기록을 통한 기록보국에 기여하고, AI와 한글속기와의 융합을 통해 기록문화 발전에 이바지

□ 주요사업 현황

- 한글속기문화 연구 및 보급, 한글속기문화의 홍보 및 출판, 한글속기 학술세미나 개최,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 개최, 국제속기연맹(인터스테노) 참가 등

■ 속기사 현황

- 속기자격증 소지자(2013~2022년): 약 10,000명
- 속기 관련 산업 종사자: 약 6,500명
 - ▲ (국회 및 지방의회) 약 1,000명, ▲(법원 및 검찰 등) 약 2,000명, ▲(자막방송 관련 종사자) 약 500명,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약 3,000명

□ [사]대한속기협회

- 누리집: www.k-steno.com
- 1969년 문화공보부 인가 사단법인→2002년 서울시 소관 사단법인으로 변경
- 한글속기 학술 세미나, 전국 한글속기 경기대회, 무료강습 등을 진행

□ [사]한국카스(CAS)속기협회

- 누리집: www.smartsteno.org
- 1999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가 사단법인
- CAS* 속기 교육의 '전문화' 및 '속기사 실무 연수' 등을 운영
- 민간자격 주관: CAS 활용 능력(빅데이터)

* Computer Aided Steno-machine

□ [사]한국시속기사협회

- 누리집: www.kcost.org
- 1996년 서울시교육청 인가 사단법인
-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 접목 및 재택, 프리랜서 형태의 속기사 활동지원, 변화하는 속기사 직무 환경
- 민간자격 주관: 데이터 전문 속기, 수사 속기